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1. 29 선고 2018가단281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피고D협동조합

변론 종결2019. 1. 15.

판결 선고2019. 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사하구 E 대 132㎡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84. 6. 7. 접수 제34080호, 같은 지원 1985. 6. 21. 접수 제5183호, 같은 지원 1985. 6. 21. 접수 제51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각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
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)

판사남현